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으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육아휴직 급여(이하 '특례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적용 근로자들의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비해 낮은 상황. 이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를 “6개월째까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20만원을”을 “200만원을”로, “120만원으로”를 “200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 6개월 째까지: ----- ----- 통상 임금----- ----- 200 만원을 ----- 200만 원으로 ----- ----- -----.		
<신 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		

② · ③ (생략)	<u>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12